

助產員 修習課程에 關한

<이화외대 간호학과 조교수> 하 영 수 ※

緒 論

오늘날 專門的教育을 받은 助產員의 業務機能이 擴大되고 特히 母子保健分野에 있어서의 이들의 役割이 社會的으로 要求됨에 따라 助產員의 質的 向上과 量的 需要는 急激히 增加하고 있으며<sup>1</sup>. 또한 助產員의 教育과 訓練(training)은 大端히 時急한 問題의 하나인 것이다.<sup>2,3</sup>

1962年 우리나라 醫療法 改正案이 國會에서 通過되자 1963年 醫療法 第12條의 規定에 依해 처음으로 助產員 修習課程이 始作되었다.<sup>4,5</sup>

本 研究의 目的은 지금까지의 이와같은 助產員 修習課程의 實態를 把握하고 究明하여 앞으로의 助產員 修習對策에 寄與하고자 한다.

研究資料 및 方法

1965年 3月부터 9月까지 약 6個月

에 걸쳐 서울 9個保健社會部 指定 助產員 修習病院中 7個病院(國立 醫療院, 서울大學校 醫科大學 附屬病院, 延世大學校 醫科大學 附屬病院, 友石大學校 醫科大學 附屬病院, 「카톨릭」醫科大學 附屬病院, 서울衛生病院, 서울 赤十字病院)에 登錄된 修習生 75名과 이미 修習을 완료한 修了者 94名(計169名)<sup>6</sup> 을 對象으로 調査를 實施한 結果 73名(修習生 48名 : 修習完了者 25名)으로부터 應答을 얻었다. 처음 試圖였던 까닭에 結果 自體에 或 遜色이 있을지 모르나 助產員教育研究에 基礎資料가 되었으면 多幸으로 生覺하는 바이다.

結 果

① 年齡分布

應答者 73名의 年齡別 分布를 보면 <表1>에서와 같이 21~25 歲層이

※ 大韓看護協會 助產分科委員長

註 1 : World Health Org. Techn. Rep. Ser., 1955. 93.

註 2 : World Health Org. Thchn. Rep. Ser., 1952, 51.

註 3 : World Health Org. Techn. Rep. Ser. 1950, 24, 20; 1952, 49. 9.

註 4 : 保健社會部, 醫療法令集, 1962.

註 5 : 保健社會部, 助產修習病院 教育指針.

註 6 : 保健社會部, 年度別 助產修習完了者 一覽表 1965.

大部分(94.5%)이었고 20세 이하(2.7%)와 26세 이상(2.7%)은 극少數였다.

이와같은 현상은 우리나라 現存 3年制 看護學校 卒業者(21~22세) 및 定規大學 看護學科 出身(22~23세)의 年齡과 一致되는 것이기도 하다.

### ② 最終出身校

調査對象者 73名의 最終出身校別 調査를 보면 3年制看護學校 卒業者가 37名으로 53%를 點하였고 그 다음 大學看護學科 卒業者는 47%(36名)였다.

### ③ 修習課程의 期間<sup>※※</sup>

助産員 修習課程의 期間에 대한 反應調査를 보면 「適當하다」가 54%로 第一 많았고 그 다음 「너무 길다」가 36%, 「너무 짧다」는 4%에 不過하

〈表 1〉 年齡別 分布

年 齡 別	實 數 (%)
20세 이하	2(2.74)
21~25세	69(94.52)
26~30세	2 (2.74)
31~35세	—
36~40세	—
40세 이상	—
계	73명 (100%)

였다. 그러나 全體的으로 볼 때 약 2/3가 不滿足하고 있음은 無視할 수 없는 것이었다.

### ④ 教科課程

助産員修習課程의 教科內容에 대한 調査結果는 「適當하다」가 55%, 「不適當하다」가 45%였다. 이와같이

〈表 2〉 修習課程教科內容이 不適當하다는 理由別分布

不適當하다는 理由	%
看護學校 工夫로 充分하다	40%
修習內容이  철저하지 못하다	25%
教育助産員을 위한  체계가 서 있지 않다	35%
講義에 比例하는 實習時間이 不足하다	10%
充分한 實習을 하지 못한다	30%
其他(不必要한 과목이 많다. 助産員과 Intern 사이에  충돌이 있다. 제한시설의 미비 등)	25%

※※ 醫療法 第15條第1號의 規定에 의해 一年으로 한다: 保社部, 醫療法令集.

全體의 거의 切半이 不適當하다고指摘하고 있는데 대한 理由別調查를 보면 「修習內容이 철저하지 못하고 充分한 實習을 하지 못한다」가 65%로 過半數였고 그 다음은 「看護學校工夫로 充分하다」가 40%, 「教育助産員을 위한 체계가 서있지 않다」가 35% 등의 順位였고 其他 「不必要한 科目이 너무 많다」가 5%, 「諸般施設이 未備하다」가 5%, 「修習生과 Intern 사이에 층들이 잦다」가 5% 등은 少數에 불과 하였다. <表 2>

⑤ 教科目 擔當者 :

助産員修習課程의 科目擔當者別調查를 보면 「看護員 助産員 資格兼備者와 專門醫가 各各 63%로 首位였으며 그外 Resident(45%), 助産員(5%), 看護員(4%), Intern(2%)의 順序로 적었음은 興味로운 것이었다. 이들 科目擔當者들의 指導內容에 대한 反應結果에 의하면 「滿足하다」가 86%로 大部分이었고, 「不滿足하다」는 불과 12%에 지나지 않았다.

⑥ 臨床實習 擔當者 :

助産員 修習課程의 臨床實習 擔當者別調查에 의하면 看護員, 助産員의 資格兼備者가 9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Resident(50%), Intern(13%), 助産員(4%), 看護員(2%) 등의 順位였다. 한편 이들 臨床實習 指導者들의 實習指導內容에 대한 反應調查를

보면 過半數(57%)가 「滿足하다」고 지적했으나 나머지 적지 않은 數(43%)가 「不滿足하다」고 表示했음은 亦是 無視할수 없는 點이었다. 이와같은 不滿에 대한 理由別 檢討를 해 보면 「實習이 철저하지 못하고 充分하지 않을 뿐더러 獨自分娩實施를 所定標準만큼 할 수 없었다」(75%)가 가장 重要한 理由였고 其他 「實習對象이 不充分하다」(25%), 「理論과 實際가 一致하지 못한다」(15%), 또는 「實習施設이 不足하다」(5%), 등의 理由는 少數였다. <表 3>

<表 3> 實習指導內容이 不滿足하다는 理由別 分布

不滿足하다는 理由	%
實習이 철저하지 못하고 充分하지 않으며 獨自分娩實施를 所定標準만큼 할 수 없다	75%
實習對象이 不充分하다	25%
理論과 實際가 一致하지 못하다	15%
實習施設이 不足하다	5%

⑦ 實習對象 :

助産員 修習課程의 實習對象者別調查 結果 分娩患者가 91%로 第一 많았고 그다음 産母(84%), 新生兒(83%), 妊娠婦(63%) 등의 順位였다.

⑧ 助産例數 :

助産修習生의 個人別 助産例數를

보면 最低 4例에서 最高 70例로 結局 1人當 平均 16名의 助産을 한 셈이 되는데 이와같은 結果는 保健社會部 指定助産例數보다 不足되는 것이었다.

⑨ 專攻科目試驗 :

<表4> 專攻科目試驗實施에 대한 反應

反 應	實 數 (%)
必要하다	43 (58.91)
不必要하다	26 (35.62)
無應答	4 (5.48)
계	73명 (100.01%)

<表4>에서와 같이 助産員修習課程을 완료한 後 專攻科目試驗의 實施與否에 대해서 「배운 知識의 總整理와 再確認을 위해 必要하다」가 59%로 過半數였으나 한편 「한갓 形式에 지나지 않을 것 같다」와 「修習課程은 實習基準이므로 不必要하다」(計 36%) 등의 反應도 적지 않았다.

⑩ 待 遇 :

現行助産員修習課程을 완료했기 때문에 받는 特別한 惠擇 및 待遇에 對한 調査를 한 結果 「아무 特惠도 없다」가 87%로 大部分이었고 無應

답은 13%로 적었다. 또한 다른 角度로는 「現在 待遇로 不滿足하다」(50%), 「滿足하다」(30%), 無應答(20%) 등 區區하였다. 이들은 주로 産母病室(30%), 分娩室(28%), 初生兒室(24%), 內外科病室(18%) 등에서 勤務하고 있었다.

考 察

現代助産員은 과거 그들이 分娩의 助産을 擔當하던 그러한 制限된 職務만을 이행하는 단순한 職業人이 아니라 正常分娩의 助産은 勿論 妊産婦 및 新生兒의 保健과 養護 및 指導에 從事하므로 國民의 保健을 向上하고 國民의 健康한 生活確保를 위해 醫師 其他 醫療保健要員들과 더불어 重責을 맡고 있다.<sup>4,7</sup> 專門助産員의 이와같은 業務機能은 助産員의 資格을 認定하는 大部分의 國家에 있어(우리나라 包含) 法的으로 規定되어 있다.<sup>8,9</sup> 즉 Austria, Norway, Sweden, 등은 1801年 歷史的으로 第一 먼저 助産員의 法的管理와 登錄에 關해 法律制定을 하였으며<sup>10</sup> 그 後 France(1803), Belgium(1818), Russia, Holland, Prussia(1865), England 및 Wales(1902), 등에서

註 7 : Wld Hlth Org. Techn. rep. Ser., 1966, 331.

註 8 : Wld Hlth Org. Int. Dig. of Hlth leg., 1954, 5, 431~482.

註 9 : 祐島永三, 保健婦, 助産婦, 看護婦, 法解説, “メヂ カルフレンド”社 昭和 25.

註10 : Mayes Mary, Hand book for midwives & maternitg nurses, 3rd edition, London, 1950, p. 461.

各各 助産員行爲를 法的으로 規定하였다. 또한 國際助産員代議員會(International Congresses of Midwives: 1930~1948)는 助産員의 敎育 또는 再修練課程, 特殊藥物의 使用 候補者選定法等 職業助産員을 위한 여러가지 問題點을 討議하고 이에 대한 規定을 採擇하였다. 그後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助産員 發達過程을 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17世紀初까지 助産行爲는 거의 獨占的으로 助産員에 依해 이행되었고 醫師들에게는 아직 그리 환영되지 않은 職業分野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17世紀末부터는 점차 醫師들이 助産分野에 直接 應하기 始作하였고 또 그러한 醫師들을 England에서는 “Men-Midwives”(男子助産員) 혹은 “Extraordinary Midwives”(特別助産員)라 불렀다<sup>8</sup>. 그後 19世紀에 이르러 醫學이 急進的으로 發達됨에 따라 醫師들은 助産員들 보다 훨씬 앞서게 되었고 또 助産分野에 從事하는 醫師들의 數도 增加되었다. 이와 時期를 같이 해서 더욱 Florence Nightingale의 活躍이 契機가 되어 看護員에 대한 社會的 認識은 높아졌으나 그러나 이때까지도 助産員에 對한 一般社會의 인식은 別로 크지 않았던 것이다.

오늘날 助産員의 職業의 位置는 各國의 事情에 따라 各各 달라질 수 있는데 그들은 助産員開業, 各病院

특히 産婦人科病室勤務 및 農漁村保健所, 家族計劃要員 등으로 活動하고 있다. 그러나 大體로 醫學이 高度로 발달된, 특히 美國의 경우는 거의 全妊娠婦가 病院에서 産婦人科專門醫에 의해 分娩하고 있으며 助産員은 다만 醫師 指示下에 妊娠婦의 産前, 産後看護를 擔當 遂行하고 있다. 그러나 反面에 Sweden, France, Wales, England, 등 現代醫學이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國家들에 있어서도 在來의 助産員 傳統이 그대로 實施되며 또 正常分娩의 助産은 거의 다 專門 助産員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sup>8</sup>. 그러나 醫師와 其他 醫療補助員(Auxiliary Medical Workers)이 不足하고 또 保健事業이 比較的 依調한 國家社會에 있어서는 專門助産員의 需給問題는 現實的으로 時急한 問題일 뿐 아니라 아직도 大部分의 妊娠婦들이 資裕助産員이나 혹은 保健看護員에게서 短期養成된 所謂 助産補助員에 의해 助産되고 있다<sup>2</sup>. 그러나 점점 科學이 발달되고 또 醫學이 發展함에 따라 특히 母子保健事業도 漸次 擴張되어서 病院에 入院分娩加療하는 妊娠婦數가 날로 增加하게 되었고, 또한 病院에서의 助産員의 活動은 若干 制限되어 專門醫의 指示와 監督下에 助産하게 되었다<sup>8</sup>. 한편 開業助産員의 役割은 都市 特別히 農漁村社會에 있어 더한층 期待되고 있는데 國

際的으로도 全妊婦의 약 80%가 助産員 其他 助産補助員에 의해 分娩되고 있고<sup>12</sup> 또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全國적으로 약 95.6%가 家庭에서 助産員 其他 所謂 “삼할머니” 등에 의해 助産되고 있다. 그러나 母子保健事業이 그 어느 時代보다 발달되고 擴張되는 요즘 特別히 大都市를 中心으로 하여 病院에서 分娩하는 妊婦數는 또한 점점 더 늘어가고 있으며 한편 專門助産員에 대한 社會의 새로운 認識과 期待는 加一倍 높아지고 있다.

이와같이 母子保健事業이 발전하고 또한 妊産婦의 産前, 産後看護가 발달되어짐에 따라 助産員의 業務機能 分野는 새로히 展開되고 擴大되었으며 또한 助産員으로 하여금 看護學에 대한 知識을 必要로 하게 되었다. 이처럼 看護學과 助産學은 서로 分離될 수 없는 密接한 關係가 있음을 理解하는 새로운 傾向을 가지고 오늘날 많은 數의 助産員들이 看護員 資格을 兼備하고 있다. England 와 Wales에서는 약 96%<sup>13</sup>, 우리나라에서는 全看護員의 약 50%<sup>12</sup>의 助産員들이 看護員의 資格을 兼備하고 있으며 特別히 日本, Haiti. 등과 같은 나라에서는 看護教育을 완료한 資格

看護員에 限해서만 助産員教育 혹은 修習課程을 開放하고 있다. 이와같이 助産員修習課程을 始作하기에 앞서 看護學課程을 완료해야 한다는 國際的 傾向은 날로 增加되어 가고 있다<sup>13</sup>.

이와같은 國際的思潮에 對應하여 우리나라에서는 1963年 醫療法 第15條 規定에 의해 助産員 修習課程이 保社部指定 助産員修習病院(13病院)<sup>6</sup>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이러한 助産修習課程의 目的은 助産修習生으로 하여금 助産에 對한 一定한 修習을 실시시켜서 助産員 免許를 附與하는데 있다.

### ① 助産員修習課程의 期間

우리나라에서의 現行 助産員 修習課程은 醫療法 第15條 第1號의 規定에 따라 그 期間을 1年으로 하고 있으며 또 修習生 資格基準을 大韓民國 政府에서 發給하는 看護員免許所持 者로 定하고 있는데<sup>4,5</sup> 이에 대한 調査對象者들의 反應을 보면 「適當하다」가 54%, 其他 40%증 「너무 길다」가 36%, 「너무 짧다」가 4%로서 「不適當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어떤 教育課程의 期間을 決定하는데는 그 課程의 目的・基準・教育方法 및 候

註11: Dept. of Preventive Medicine &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tudy on Method to Improve Simultaneously Vital Statistics & Family Planning Among Maternity Cases," Seoul, 1966.

註12: "統計上으로 본 看護員實態 현황" 大韓看護, Vol. 5, No. 1, 1966, p.101.

註13: Wld Hlth Org. Techn. Rep. Ser., 1950, 24, 16.

補者資格등과 깊은 關聯이 있는 것으로서 外國의 경우를 보면 日本은 6個月, Haiti는 12個月로 되어 있다. 이같은 國家들에서는 그 課程의 基本資格을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資格看護員으로 定하고 있음을 理解할 수 있다<sup>8</sup>. 此外 單獨 助產員 教育課程으로는 Austria, Seychella, South Africa, 등에서는 18個月, Germany, Cyprus, Finland, Newzealand, England등에서는 24個月, 其他 Belgian Congo, Belgium, France, Italy 등에서는 3年間으로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大體로 候補生의 資格基準이 專門看護員인 경우 다시 말해서 助產員修習課程의 水準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期間은 大概 6個月 내지 12個月로 短縮된다. 이러한 點으로 미루어볼 때 現行 助產員修習課程의 期間은 合理的인 것이며 是正의 餘地가 없는 것으로 본다.

## ② 教科課程

우리나라 現行 助產員 修習教科課程을 보면 助產學(79時間), 初生兒看護(45時間), 臨床症例示範(45時間) 職業的調整(35時間), 麻醉(20時間) 등 純全히 助產修習을 專攻으로 하는 教科科目으로 構成되어 있고 또 1日 學科 및 實習時間을 8時間으로 하여 學科時間을 除外한 殘餘時間은 實習時間으로 하고 있는데<sup>5</sup>. 이에 對한 調查結果 적지 않은 數 즉 全對象者의

45%가 「不適當하다」고 지적하였고 또 그 理由를 檢討해 보면 修習內容이 철저하지 못하고 充分히 實習을 하지 못한다」가 65%, 「看護學校工夫로 充分하다」가 40%, 「教育助產員을 위한 체계가 서 있지 않다」가 35%, 「諸般施設이 未備하다」가 5% 등 주로 修習內容과 助產員教育을 위한 체계가 確立되어 있지 않았음을 不滿해 하고 있었다. 한편 WHO 助產員訓練課程 特別委員會에서 提案한 最低教科內容을 보면 生物學과 自然科學등의 基礎學을 비롯하여 保健學 特히 母性死亡의 原因과 豫防 周產期死亡등 母子保健에 關한 知識, 妊娠生理, 心理 및 病理에 對한 理解, 妊產婦榮養과 情緒問題등을 包含한 產前健康管護와 正常分娩의 充分한 知識과 理解, 產後診察의 意義라던지 產母의 看護와 新生兒養護, 適切한 診療記錄과 記錄保管의 價値 등에 關한 知識과 理解, 其他 助產行爲를 시행함에 있어 必要한 知識과 技術의 習得은 필수적인 것이다. 또한 開業助產員의 法的規定과 높은 水準의 倫理觀과 保健行政등에 對한 理解를 부여하므로 專門助產員으로서의 能熟性을 촉진시키고 此外 國民保健에 影響하는 社會, 文化, 經濟的 要因에 關한 理解와 人間心理, 및 態度 등에 對한 知識을 얻게 하므로 患者 또는 患者家族들과의 원만한 對人關係와 自身の 올바른 理

解를 도와주며 其外 學習의 原則 學習指導方法등에 對해 理解力을 갖게 하므로 保健教育을 할 수 있는 能力을 길러주는 것은 絶對的으로 必要할 것이다. 14, 15.

그러나 教科課程의 實際的 構成에 있어서 가장 核心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바람직한 學習目標의 決定과 그 決定된 目標을 達成하기 위한 效果的인 手段計劃과 또한 學習者의 理解程度등이 考慮되어 學習者와 教科內容이 調和로운 均衡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sup>16</sup>. 卽 資格看護員에 對한 助産員訓練 또는 修習課程에 있어서 는 上述한 WHO 教科課程 特別委員會에서 提案된 內容中 어떤 것은 看護教育課程을 통해서 이미 修了된 科目도 있게 되므로 그것은 自然 削除하고 그 外의 것만을 習得케 하는 것이 原則일 것이며 또 이와 反對로 或 單獨助産員 教育課程인 경우에는 上記 提案된 教科內容은 勿論 그 以上의 (特히 看護學分野) 教科目을 包含시킬 必要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現行 助産員 修習課程의 教科內容을 比較 檢討해 보면 基礎學이라던지 保健學, 人間心理, 學習의 原則 其他 여러가지 重要 關係科目이 除外되어 있음을 發見할 수 있는

데 그것은 現 助産修習生의 資格基準을 看護員으로 規定하고 있기 때문에 看護學校 教科課程<sup>17</sup>에 包含된 大部分의 關係科目, 基礎學등이 除外되어 있다. 勿論 修習課程이니 만치 充分한 助産實習에 置重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한편 現在의 教科課程에 分娩을 위한 解産婦의 心理, 公衆保健學, 學習指導方法 및 地域社會에 있어서의 分娩에 對한 迷信 또는 誤認등에 關한 知識과 理解를 添加 教育시키므로 보다 廣範圍한 知識을 習得케 하고 能率的인 保健要員으로서의 專門助産員으로 訓練指向시키는 것이 더 意義있다고 본다.

### ③ 助産員修習病院의 基準

우리나라 現行 助産修習病院의 施設基準과 實積을 (醫療法 第15條 第1項) 仔細히 調查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助産修習病院은 1年間 平均 分娩例數가 30例 以上되는 綜合病院 또는 病院이라야 한다. (醫療法施行規則 第2條) ②産婦人科 患者 20名 以上을 入院 收容할 수 있어야 한다. ③分娩待期室. ④分娩臺 2臺 以上 ⑤分娩室에는 初生兒 蘇生機 및 分娩患者의 救急處置用 器具를 具備해야

註 14: 權壽赫, 公衆保健學, 서울, 1963.

註 15: Wld Hlth Org. Techn. Rep. Ser., 1954, 69, 10-11 (Sections 3, 1, 2 to 3, 1, 4).

註 16: L. E. Heidgerken, Teaching in Schools of Nursing, Philadelphia, 1953, pp. 190-199.

註 17: 看護學校規程 3 文敎部令 第166號 (1965. 11. 23).

한다. ⑥初生兒와 未熟兒의 保育을 위한 施設, ⑦調乳室, ⑧ 產母病室, ⑨隔離室, ⑩脫衣室, ⑪沐浴室, ⑫ 檢査室 ⑬其他 施設은 醫療法 施行規則 第31條의 規定에 의한다<sup>4.5</sup>. 라고 되어 있는데 以上과 같은 施設의 基準은 WHO助產員教育 特別委員會에서 規定한 助產員教育 및 修習病院의 施設基準과 一致되는 것이기도 한데 이에 대한 調查結果를 참고해 보면 주로 「修習內容이 철저하지 못하고 充分히 實習을 하지 못한다」가 65%, 「教育助產員을 위한 체계가 서 있지 않다」가 35%, 「諸般施設이 未備하다」가 5% 등의 理由로 不合理性을 지적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현상은 비단 教育制度, 內容 및 方法등에만 關係되는 것이 아니며 教育施設과도 密接한 關聯이 있는 것으로서 事實上 重要視하지 않을 수 없는 問題일 것이다. 即 以上과 같은 助產修習病院의 施設과 同時에 適切한 教育施設( Teaching Unit)이 兼備되어야 함은 再言할 必要조차도 없는 것으로 教室, 示範室, 圖書室, 教職員室, 其他 骨盤 및 兒頭模型, 檢査器具(少便과 血液檢査), 體重計, 聽診器, 血壓器, 黑板, 產前診察과 家庭分娩을 위한 訪問用「가방」, 視聽覺教材등 여러가지 助產員 教育에 必要한 教育資料와 器具가<sup>18</sup> 完備되어 있느냐 하는 問題는 重要視되며 이에 對한 앞으로의 再檢討가 必要할 것이며 또 이

와같은 教育施設의 確立은 助產員修習課程의 目的 達成을 위해 時急하며 早速한 對策이 要請되는 바이다.

#### ④ 臨床實習指導

우리나라 現行 助產員 修習課程에 있어서의 實習指導 內容에 對한 調査結果는 全對象者의 過半數(57%)가 「滿足하다」하였고 나머지 43%에 該當되는 적지 않은 數가 「不滿足하다」라고 지적하였다. 또 그러한 不滿足에 對한 理由別調査를 分析해 보면 「實習이 철저하지 못하고 不充分하며 또 獨自分娩實施를 標準例數만큼 經驗할 수 없다」가 75%, 「實習對象이 不足하다」가 25%, 「理論과 實際가 一致되지 않는다」가 15%, 또는 「實習施設이 不足하다」가 5% 등 주로 實習內容에 關해서 不滿足하고 있었다. 그런데 實習內容이 철저하다 또는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은 亦是 助產員教師의 能力과 學習指導方法등과 直接的으로 關係되는 것이며 또한 가장 좋은 學習指導方法을 決定하는 데는 教育課程의 目的, 講義內容, 割當된 時間利用이 可能한 施設, 學習方式, 修習生들의 年齡과 能力의 程度 및 教師의 數등 상세하게 研究되어야 할 것이다<sup>19</sup>. 勿論 講義, 實習室에서의 實習, 症例示範, 病室이나 外來에서의 直接的인 學習經驗 其他 視聽覺教育材料의 使用 등은 効果的인 學習指導方法들이나. 이 중

에서도 몇가지 助産員訓練 또는 修習課程에 있어서의 特殊한 方法을 考察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事例研究 (The Case Study) :

助産修習生은 自己가 도맡아 管理하고 看護하는 特殊妊産婦와 關聯된 여러가지 個人問題 특히 그 問題의 所在와 原因 또는 發生條件을 明白히 하는 方法 즉 患者의 家族歴, 家庭訪問, 産前, 分娩 및 産褥期, 其他 新生兒 所見등에 대해 適當히 記錄한다. 또 그 記錄된 內容을 통해서 妊産婦의 瀦난한 健康管理와 처치등과 關聯되는 여러가지 要因을 이해하고 평가하며 또 記錄保管과 記錄의 價値등을 理解할 수 있는 좋은 契機가 되게 한다.

② 患者配當 (The Case Assignment)

助産修習生에게 몇명의 妊産婦 또는 新生兒를 配當해 주고 指導와 監督下에서 直接擔當管理케 하는 方法으로써 이런 學習方法을 통해 修習生들은 責任感이 育成되며 또 그런 直接體驗에서 큰 보람을 經驗하게 될 것이다.

③ 臨床實習指導 (The Clinical Teaching)

助産員教師를 위주로 하여 産婦人科專門醫, 小兒科專門醫, 및 臨床實習指導者는 助産修習生에게 助産學

의 理論을 家庭, 外來 또는 病室에서 의 實際 臨床實習과 結付시켜 研究, 實習하게 指向한다. 즉 어떤 특수한 환자에 關聯되는 모든 要因에 대해 배우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方法이다.

④ 集團討議 (Group discussion)

일정하지 않은 수의 사람들로 구성되는 이 集團討議의 長點은 다같이 함께 모여서 어떤 問題에 대해 檢討하고 또 서로 意見을 交換하므로 그 問題에 대한 自身の 見解를 發表하고 質疑함으로써 參加者들의 意見을 綜合할 수 있는 것이다<sup>18</sup>.

⑤ 示範 (Demonstration)

어떤 技術이라던지 處置方法등에 대해 示範하여 보이므로서 效果的으로 指導할 수 있는 것으로 教師의 示範이 끝난후 修習生으로 하여금 뒤이어 演習할 수 있는 機會를 마련해 줌은 더욱 效果的이다.

以上과 같은 여러가지 助産實習指導方法을 어떻게 잘 適用하며 效果的으로 指導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亦是 助産員教師의 資質과 指導能力에 따라 左右될 수 있다고 본다.

⑥ 助産員教師의 資格

우리나라 現行助産員修習課程 臨床實習擔當者를 調査해 본 結果看護員, 助産員資格兼備者가 91%로 絶對多數였고 其外 助教(Resident),

註 18 : Wld Hlth Org. Techn. Rep. Ser, 1954, 89, 35.

「인턴」(Intern), 助産員, 看護員 등의 順位로 적었다. 또 이들 臨床實習指導 擔當者들의 實習指導 內容에 關한 反應을 보면 「滿足하다」가 57%, 그 밖에 43%가 「不滿足하다」라고 反應하였다. 또 그 不滿足의 理由別 調査를 볼 것 같으면 주로 「實習이 철저하지 못하고」 또 「實習이 不完全하다」라고 (計 65%) 지적하였다.

助産員教師의 資格은 人格, 知識, 經驗 등 3가지를 基本으로 하고 있다<sup>19</sup>. 즉 教師는 修習生으로 하여금 배우려는 意欲을 촉진하며 또한 언제나 배울 수 있는 機會와 立場을 마련해 줄 수 있고 또 專門的 職業을 實行함에 있어서의 높은 理想과 抱負를 고취해 주는 勿論 知識을 傳達할 수 있는 能力의 所有者라야 할 것이다<sup>20</sup>. 뿐만 아니라 助産員教師는 實務에 있어서의 豊富한 經歷의 所有者며 또한 看護員資格을 兼備한 者로 특히 公衆保健學에 關한 充分한 知識과 其他 學歷에 있어서도 基礎教育課程 以上の 教育을 받은 實力의 所有者며 또한 産婦人科 專門醫, 小兒科 專門醫 및 保健看護員과 協助하고 共同研究할 수 있는 指導的 人格의 所有者라야 할 것이다<sup>21, 22</sup>. 또한 助産員實習指導者는 修習生들의

臨床實習指導와 監督 및 患者保護의 責任을 引受한다. 이러한 臨床實習指導者의 資格은 病院에 勤務하는 助産員 또는 開業助産員, 其外 保健所에 所屬된 保健看護員 등으로 적어도 學習의 原則, 學習指導方法, 保健教育, 保健行政, 人間關係 및 公衆保健 등에 對한 短期課程을 완료한 知識의 所有者라야 한다<sup>2</sup>. 이러한 見地에서 볼 때 現行助産員修習課程에 從事하고 있는 助産員教師 및 臨床實習指導者의 資格基準에 對한 再檢討가 要請될 뿐 아니라 그들을 위한 어떤 再訓練課程(短期) 또는 講座(Seminar) 등 그들의 水準을 높일 수 있고 또 擔當分野에 關하여 專門的 研究를 할 수 있는 機會를 마련하여 質的 向上을 도모하는 것은 時急한 問題일 것이다.

#### ⑦ 助産員待遇 :

우리나라 現行 助産員 修習課程을 받은 後에 주어지는 特別惠澤 또는 待遇를 調査해 보면 「아무 特惠도 없다」가 87%로 大部分이었으며 그外 無 應答이 13%였다. 한편 「現在待遇로 滿足하다」가 34%, 「現在待遇로 不滿足하다」가 50% 등의 順位였는데 이들은 주로 産母病室(30%), 分娩室(28%), 初生兒室(24%), 內外科病

註 19 : American Nurses' Association, "Functions Standards & Qualifications for Practice for Administrators & Teachers, New York, 1963.

註 20 : Wld Hlth Org. Techn. Rep. Ser., 1953, 69, 18.

註 21 : Wld Hlth Org., Techn. Rep. Ser., 1952, 49, 15.

註 22 : Wld Hlth Org. Techn. Rep. Ser., 1950, 24, 14.

室(18%) 등에서勤務하고 있었다. 이들 助産員修習課程을 완료하고 助産員의 免許를 附與받은 助産員은 어디까지나 專門助産員으로서의 機能과 業務를 이행할 責任이 있으며 또 그들로 하여금 주어진 職務遂行을 充分히 할 수 있는 機會와 條件의 具備와 正當한 待遇를 받는 것이 重要하다고 누구나 다 認識하고는 있으나 實際로 그렇지 못한 것이 現下 우리나라의 實情이기도 하다. 이런 까닭으로 大部分의 助産員들이 專門的인 職務를 實行할 수 없는 立場에 處해 있을 뿐 아니라 專門職業人으로서의 正當한 待遇와 認定을 받지 못하므로 마침내 助産員의 權利를 포기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러한 專門職業人을 위한 特殊課程의 意義조차도 忘却하고 懷疑를 느끼게 된다. 故로 資格看護員으로서 이와같은 助産修習課程을 완료한 看護員助産員의 資格兼備者들을 위한 助産職公務員의 職制制定과 職級에 있어서도 現在 看護員職公務員의 最低職級이 5級이므로 1級을 昇級시켜 最低 4級으로 하고 또 病院勤務時에도 分娩室과 産婦人科病室 및 産婦人科外來 등에 優先적으로 配置 勤務토록 함이 效果的이며 또한 個人本位로 하되 可及의인 責任職을 附與하고 助産職手當을 支給하는등 看護員助産員資格兼備者를 위한 待遇改善이 時急하게 要請되는 바이다.

## 結 論

現行 助産員 修習課程에 關한 實態 調査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最近 母子保健事業이 어느 時代보다 發達하고 擴張됨에 따라 助産員의 業務機能分野는 産前産後看護로 새로히 展開되고 助産員으로 하여금 看護學에 對한 知識을 必要로 하게 되었고 또 이와같은 새로운 傾向과 아울러 助産員修習課程을 始作하기에 앞서 看護學教育課程을 완료해야 한다는 國際的 傾向은 날로 증가되고 있다.
2. 現行 助産員修習課程의 教科課程이 「適當하다」가 55%, 「不適當하다」가 45% 등의 順序였는데 特히 「不適當하다」고 지적한 理由別 調査를 보면 「充分한 實習을 하지 못한다」(65%), 「教育助産員을 위한 체계가 서있지 않다」(35%), 등 주로 實習內容과 教育系統에 對한 不滿足을 反映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事實은 이 分野에 있어서의 앞으로의 時정이 要請되는 것으로 各修習病院에 있어서의 教育施設( Teaching Unit)의 再調整 및 確立과 아울러 修習生 個人別 助産例數의 增加 및 體系的인 助産修習을 習得케 함이 重要하다.
3. 現行助産員 修習課程의 臨床實習指導者에 對한 調査에 의하면 43%가 「不滿足하다」라고 지적하였고 特히 不滿足의 主要理由가 「實習이 철저

하지 못하고 不充分」(45%)하기 때문이라고 표명한 것은 助産實習指導者들의 質의向上과 또한 實習에 利用될 病院施設 및 教育施設의 再調整 및 效果的이고 能率的인 學習指導方法등 적절히 適用하므로 理論과 實際가 一致할 수 있도록 指導하므로 시정될 수 있다고 본다.

4. 現行助産員修習課程을 완료한 후 주어지는 特別한 惠澤 또는 待遇에 對한 調査를 보면 大部分(87%)이 「하등 特惠가 없다」라고 지적하였고 또 切半數(50%)가 「現在待遇는 不滿足하다」라고 지적한 事實은 또한 大部分의 資格助産員들이 專門職業人으로서의 正當한 待遇와 認定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와같은 助産修習課程을 완료한 看護員助産員資格兼備者들을 위한 助産職公務員의 職制制定과 職級에 있어서도 最低 4級으로 하고 또 病院勤務時에도 分娩室, 産婦人科病室 및 産婦人科外來등에 優先的으로 配置 勤務케 함이 效果的이며 可及的 責任職을 附與하는 등 看護員助産員資格兼備者를 위한 待遇改善이 時急하다고 본다.

#### 參考文獻

1. Wld Hlth Org. Techn. Rep. Ser., 1955, 93
2. Wld Hlth Org. Techn. Rep. Ser., 1952, 51
3. Wld Hlth Org. Techn. Rep. Ser.,

1950, 24, 20: 1952, 49, 9.

4. 保健社會部, 醫療法令集, 1962.
5. 保健社會部, 助産修習病院, 教育指針.
6. 保健社會部, 年度別助産修習完了者一覽表, 1965.
7. Wld Hlth Org. Techn. Rep. Ser., 1966, 331.
8. Wld Hlth Org. Int. Dig. of Hlth Leg., 1954. 5. 431-482.
9. 祐島永三, 保健婦, 助産婦, 看護婦, 法解説, “メヂカル, フレンド”社 昭和 25.
10. Mayes Mary, *Handbook for Midwives & Maternity Nurses*, 3rd edition, London, 1950, p. 461.
11.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tudy on Method to Improve Simultaneously Vital Statistics & Family Planning Among Maternity Cases,” Seoul, 1966.
12. “統計上으로 본 看護員實態 현황”, 大韓看護, 5, 1, 1966, p. 101.
13. Wld Hlth Org. Techn. Rep. Ser., 1950, 24, 16.
14. 權彝赫, 公衆保健學. 서울, 1963.
15. Wld Hlth Org. Techn. Rep. Ser., 1953, 69. 10-11 (Sections 3.1.2. to 3.1.4)
16. L. E. Heidgerken, *Teaching in Schools of Nursing*, Philadelphia, 1953, pp. 190-454.
17. 看護學校規程(文教部令 第116號 1965.11.23) <50 page에 계속>